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 이희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일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연령층에 걸쳐서 광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재범률이 현저하게 높아지면서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마약류 중독예방과 재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상위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또한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최근 심각하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마약류 노출에 대한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입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상위법의 취지를 잘 반영해왔습니다.

- 금번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토대로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시장으로하여금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 조례안 개정을 통해 마약류 중독 예방과 그 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기시키는 한편 시장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고자 합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여 상위법 개정의 취지와 맥을 같이 하였고, 안 제3조를 신설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여 서울시의 특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